

금융지원

-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 신청시기
연중수시

1-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 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관련 페이지) 융자제한 대상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p.30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 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회복복지(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입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세부내용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용자규모

- 용자규모 : 1조 3,000억원

:: 용자방식

-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민간금융 매칭형)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대출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지원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신청시기
연중수시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략사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전략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지원내용

- 대상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건설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 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3,50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지원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신청시기
연중수시

1-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신성장기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응자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기업당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8,35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방식에 한함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지원

-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 신청시기
연중수시

1-4.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제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긴급경영안정사업

- 지원내용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 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로 직전년도(또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 말 또는 직전 분기 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 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약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기업
- 부당하도급 피해로 공정위의 심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관련 페이지) 융자제한 대상 : p.30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대상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선진단 추진기업은 융자제한 대상 ⑧항 적용에서도 제외하며,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융자제한 대상 ⑧항 중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가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도 제외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대출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단,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14. 8. 19까지 아래 기준을 적용

구분	① 피해자·유가족 운영사업체	② 차량·화물피해 사업체
융자 조건	업체당 최대 7천만원 (매출액 1/3)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금리 0.0%(무이자) 적용	고정금리 2.0% 적용

2. 수출금융지원사업

• 지원내용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1,00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지원

-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 신청시기
연중수시

1-5. 사업전환자금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단,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관련 페이지) 융자제한 대상 : p.30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 개선 진단 추진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대상 ②항, ⑦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⑥항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적용에서 제외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융자제한 대상 ⑧항의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기업 적용 제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관련 페이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융자제한 대상 ⑥항, ⑧항 적용에서 예외 : p.30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에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1,70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금융지원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신청시기
연중수시

1-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 활용하여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세부내용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4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 업력 7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 업력 7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 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은 10억원)

∴ 융자규모 및 방식

- 융자규모 : 1,50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www.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지원

- ☑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 신청시기
1/4분기

1-7.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IT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ICT 및 IC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SW·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 지원내용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여 대출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과제당 최고 20억원(소요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융자지원
 - ※ 단, 기 지원업체의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대출금액기준 5년간 20억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술개발기간(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에서 1%p 차감한 금리적용 (14. 2분기 적용금리 2.2%)
 - ※ 금리 계속 하락 시 최저 대출금리는 1.6% 적용

:: 용자규모

- 용자규모 : 570억원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4. 3. 13(목)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수시)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nipa.kr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42)710-1211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금융지원

- ☑ **관련부처**
정책금융공사
-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 **신청시기**
연중수시

1-8. 온렌딩(On-lending)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 등의 미래전략산업이 굳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설립 후 관련 업력이 3년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 기준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대상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중소·중견기업, 기술력 평가 중소기업
 - 녹색산업 : 녹색인증 기술 및 사업분야 해당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미래기획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7개 부문,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해당기업, 6T영위기업, 첨단 부품소재 산업해당기업
 - 수출중소·중견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 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 기술력평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서 기준등급 BBB 이상, 관계 중앙행정부처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중개금융기관 자체 기술력평가 프로그램 적용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 사용한도
 - 중소기업
 - 시설자금대출 : 건당 1억원 이상 ~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대출 : 건당 1억원 이상 ~ 20억원 이내

- 중견기업
 - 시설자금대출 : 건당 1억원 이상 ~ 250억원 이내
 - 운전자금대출 : 건당 1억원 이상 ~ 100억원 이내
 -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은 특별온렌딩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기 사용한다
2~3배까지 사용한다 확대가능
- 온렌딩대출 금리(온렌딩 기준금리 + 스프레드)
 - ‘온렌딩 기준금리’는 자금유형(시설, 운전)에 따라 채권기준금리 또는 CD 기준금리와 연동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 ‘스프레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각 중개금융 기관(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신용위험분담제도 : 재무적 신용도는 부족하나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을 돕는 차원에서 중개금융기관이 감수해야 하는 온렌딩대출 원리금 미회수위험(채무불이행위험)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일부 분담하는 중소기업 신용보강제도
 - 신용위험분담비율 : 중소기업은 시설·운전자금 온렌딩대출 금액의 50% 이내, 지방중소기업 및 특별온렌딩은 온렌딩대출 금액의 60% 이내
 - 지방중소기업은 서울·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특별온렌딩은 신성장동력산업·녹색산업 관련기업 및 고용창출 해당기업을 지칭함
 - * 단,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위험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녹색분야에 한해서는 40% 이내 신용위험분담 요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은행) 영업점에서 일괄 진행(신청) 및 해당 중개금융기관(은행)은 온렌딩대출 희망기업의 이용 요청을 토대로 공사와 중개금융기관 간에 정해진 온렌딩대출 절차 진행

문의처

www.kofc.or.kr

•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금융2부 (02)6922-5326, 05

금융지원

- ☑ **관련부처**
정책금융공사
-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 **신청시기**
연중수시

1-9. KoFC 프론티어챔프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응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정부의 'World Class 3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공사 신용등급 BB+ 이상인 기업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 타기관(은행, 정책금융기관 포함)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 6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2개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 이상인 기업
 - 최근 2개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정책금융공사가 KoFC Frontier Champ로 선정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및 투자지원에 있어서 우대
- 세부 내용
 - 직접대출 : 시설자금/운전자금
 - 직접투자 : 공모사채 인수 등
 - 대출금리 : 직접대출시 금리우대(정책금리 차감) : $\Delta 0.2\%p$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이상 ~ 20년 이내
 - 운전자금 : 3년 이내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300억원(연간 신규승인누계액 기준)
 - 운전자금 : 100억원(연간 신규승인누계액 기준)
- 지원절차 : 선정요청(업체) → 평가 및 선정(KoFC) →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4. 12. 31(수)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신청



www.kofc.or.kr

•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금융1부 (02)6922-6853, 7534, 6864, 6866

금융지원

☑ 관련부처
환경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신청시기
1, 3/4분기

1-10.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환경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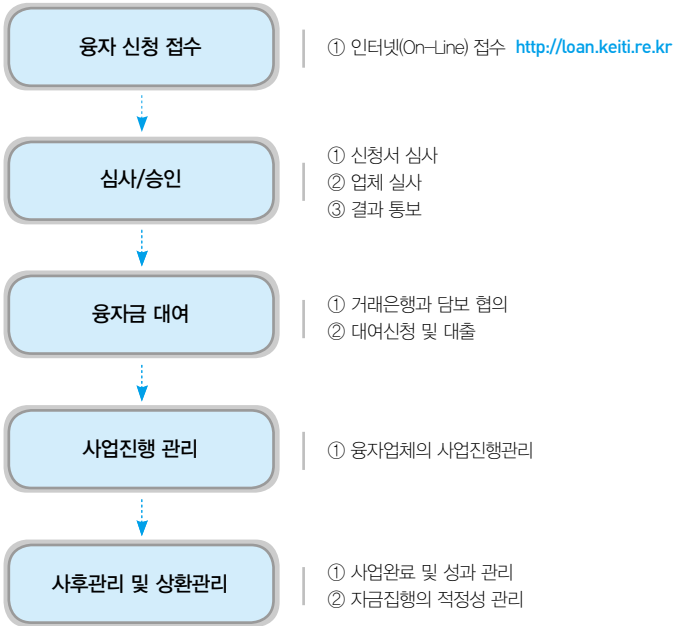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산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사업명	융자 규모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대출 금리	대출 기간
환경산업 육성자금	455 억원	중소환경 산업체 또는 환경시설 제작업체	시설자금	40억원	2.87% (인출 시점별 고정금리)	3년 거치 4년 상한 (7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상한 (5년 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지원자금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750 억원	중소재활용 사업자	시설자금	25억원	2.87% (분기별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상한 (10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기술개발자금	4억원		2년 거치 3년 상한 (5년 이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500 억원	중소기업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30억원	2.87% (인출 시점별 고정금리)	3년 거치 4년 상한 (7년 이내)

● 추진절차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매년 상·하반기 신청공고 후 개시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용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www.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3800-252~9
- 환경부 환경산업과